

부산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5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5259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0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B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경문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30.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2138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E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100,000,000원, B에게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수계 전 원고 B는 제1심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문 기재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문 기재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소송수계 전 원고 A은 제1심에서 1억 3,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문 기재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주문 기재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 전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소송수계 전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의 음식점 영업

E는 2015. 3. 19. I과 사이에 양산시 J에 있는 K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19.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5.부터 위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B, A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1) B는 2014. 7. 25. E, L에게 변제기를 2015. 8. 10.로, 이자를 연 18%,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고, E, L이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E, L으로부터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는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 북구 AC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L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상업시설 3층 중 O호, P호, Q호에 관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였다.

2) A은 2015. 9. 9. E에게 피고의 남편 R의 연대보증 아래 변제기를 2016. 9. 10.까지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E의 피고에 대한 재산처분

E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관한 영업재산과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양도대금을 E의 남편 A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6. 2. 26.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제소 및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A, B는 2016. 5. 9.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7. 1. 25. 울산지방법원 2017개회151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A, B의 E에 대한 채권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개인회생 사건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채 진행 중이다. 한편 E는 위 개인회생절차 중에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2020. 8. 4. 소송수계 전 원고 A, B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2, 5, 10, 11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 B가 2016. 5. 9.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7. 3. 20. 울산지방법원 2017개회1510호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박운삼, 판사 임상민

[별지]

음식점 영업의 표시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2. 상호: G
3. 대표자: E
4. 소재지: 양산시 J, 3층
5. 사업의 종류: 업태-음식, 종목-한식. 끝.

